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2.

발 의 자 : 김대식 · 서지영 · 임종득
김 건 · 강선영 · 윤한홍
인요한 · 안상훈 · 곽규택
고동진 · 조경태 · 김예지
배현진 · 김민전 · 정성국
서범수 · 김소희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,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·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.

그러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, 자회사 의무 지분을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,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을

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,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의2, 36조의4,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).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2제2항제3호 중 “현물출자하고,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”을 “현물출자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

⑥ 기술지주회사의 분할·합병, 설립기관 추가·변경 등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
변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36조의4제4항 본문 중 “자회사”를 “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36조의5제1항 중 “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(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)”을 “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

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학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제36조의8제1항제1호 중 “제36조의2제2항 각 호”를 “제36조의2제2항제1호, 제2호, 제4호, 제5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의2(기술지주회사의 설립 · 운영) ① (생 략)	제36조의2(기술지주회사의 설립 ·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 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 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산학협력단등(제1항 각 호 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 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 을 <u>현물출자하고,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여 보유할 것</u>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현물출자할 것</u>
<u><신 설></u>	4. <u>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 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 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</u>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<u>기술지주회사의 분할·합 병, 설립기관 추가·변경 등</u>

	<u>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 변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</u>
제36조의4(자회사의 출자 등) ① ~ ③ (생략)	제36조의4(자회사의 출자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기술지주회사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는 제외한다)는 <u>자회사의</u>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회사</u> <u>설립 시 자회사</u> ----- -----.
⑤ ~ ⑦ (생략)	<단서 삭제>
제36조의5(기술지주회사의 명칭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① <u>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(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)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</u>	① <u>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학</u> ----- -----.

<u><신 설></u> ② (생 략) 제36조의8(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1. <u>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</u>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. 3. (생 략) ② (생 략)	② <u>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</u>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제36조의8(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제36조의2제2항제1호, 제2호, 제4호, 제5호</u>----- 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